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6일 이은미 의원이 발의하고, 2023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 지역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직무에 대한 내용을 규칙에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근거 정책지원관 업무 범위 규정(안 제4조제1항)

나. 의원 지휘 아래 정책지원관 소관업무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규정
(안 제4조제2항)

다.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실시’에 따라 제명에 띄어쓰기 반영

3.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제명을 맞춤법에 의거하여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1항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들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5조 및 제7조에서
정책지원관 운용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본 규칙으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